

# 2026년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http://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협약체결 약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 기회 마련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7년(또는 10년\*) 이내 창업기업
  - \* [붙임 3]의 신산업 또는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6. 4월 ~ '26. 11월 예정)
- 모집 분야 및 선정규모** : 총 403개 사 내외 (AC 370개 사 / OI 33개 사)
  - \* 18개 프로그램 중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 ① AC(Acceleration) : 글로벌기업의 자원과 전문성 등을 창업기업 대상 제공
  - ② OI(Open Innovation) : 글로벌기업과 창업기업 간 실제 협업(R&D, , PoC, PoV 등)

< '26년 글로벌 기업별 주요 지원 분야 및 규모(안) >

프로그램명		[창구]	[엔업]	[마중]	[다운다]	[ASK]
협업기업						
모집분야		모바일 서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하이테크
모집유형		AC	AC	AC	AC	AC
지원 규모	1단계	100	50	35	30	30
프로그램명		[지중해]	[정글]	[미라클]	[IBM Quantum]	[ASK SPACE]
협업기업						
모집분야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인공지능 분야	클라우드 기반 AI/ML 활용 스마트 솔루션	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	우주항공
모집유형		AC	AC	AC	AC	AC
지원 규모	1단계	30	30	30	5	15
프로그램명		[열림]	[HP Garage 2.0]	[인지니어스]	[Trust my Tech]	[로레알 빅뱅]
협업기업						
모집분야		인공지능	PC 및 인공지능	인공지능	딥테크	연구혁신 디지털
모집유형		AC	AC	OI	OI	OI
지원 규모	1단계	10	5	10	10	3
프로그램명		[NEO]	[아스텔라스 협업]	[Konnectz]		
협업기업				Mercedes-Benz		
모집분야		친환경 에너지	제약, 바이오	모빌리티		
모집유형		OI	OI	OI		
지원 규모	1단계	5	2	3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AC 트랙 평균 : 1.15억원 내외, OI트랙 : 1.35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및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지원 세부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p>▶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p> <p>*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p> <p>**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lt;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화 자금</th> <th>지원기간(공통)</th> </tr> </thead> <tbody> <tr> <td>• AC 트랙 : 평균 1.15억원 (최대 2억 원) 내외</td> <td rowspan="2">8개월 이내</td> </tr> <tr> <td>• OI 트랙 : 평균 1.35억원 (최대 2억 원) 내외</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 총 사업비 구성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 <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p>*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p> <p>※ 사업비 구성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288백만원</td> <td>200백만원</td> <td>33백만원</td> <td>55백만원</td> </tr> <tr> <td><b>100%</b></td> <td><b>69.4%</b></td> <td><b>11.5%</b></td> <td><b>19.1%</b></td> </tr> </tbody> </table>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공통)	• AC 트랙 : 평균 1.15억원 (최대 2억 원) 내외	8개월 이내	• OI 트랙 : 평균 1.35억원 (최대 2억 원) 내외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88백만원	200백만원	33백만원	55백만원	<b>100%</b>	<b>69.4%</b>	<b>11.5%</b>	<b>19.1%</b>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공통)																										
	• AC 트랙 : 평균 1.15억원 (최대 2억 원) 내외	8개월 이내																										
	• OI 트랙 : 평균 1.35억원 (최대 2억 원) 내외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88백만원	200백만원	33백만원	55백만원																								
<b>100%</b>	<b>69.4%</b>	<b>11.5%</b>	<b>19.1%</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비 목</th> <th>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td> <td>•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td> </tr> <tr> <td>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td> </tr> </tbody> </table>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95 255 1390 880"> <thead> <tr> <th data-bbox="395 255 539 297">비 목</th> <th data-bbox="542 255 1390 297">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5 302 539 450">인건비</td> <td data-bbox="542 302 1390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li> <li>*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의 자)은 인건비 지급 불가</li> </ul> </td> </tr> <tr> <td data-bbox="395 454 539 602">지급 수수료</td> <td data-bbox="542 454 1390 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li> </ul> </td> </tr> <tr> <td data-bbox="395 607 539 683">여비</td> <td data-bbox="542 607 1390 6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li> </ul> </td> </tr> <tr> <td data-bbox="395 687 539 763">교육훈련비</td> <td data-bbox="542 687 1390 7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li> </ul> </td> </tr> <tr> <td data-bbox="395 768 539 875">광고선전비</td> <td data-bbox="542 768 1390 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li> </ul> </td> </tr> </tbody> </table>	비 목	비목 정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li> <li>*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의 자)은 인건비 지급 불가</li> </ul>	지급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li> </ul>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li> </ul>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li> </ul>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li> </ul>		
비 목	비목 정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li> <li>*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의 자)은 인건비 지급 불가</li> </ul>														
지급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li> </ul>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li> </ul>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li> </ul>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li> </ul>														
<b>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b>	<p>▶ 주관기관(창업지원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p> <p>※ 주관기관 역할 : 창업기업 지원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관리 등을 지원</p>														
<b>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b>	<p>▶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크레딧, 솔루션 무상 또는 할인 제공, 기술 및 비즈니스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395 1346 1401 1912"> <thead> <tr> <th data-bbox="395 1346 539 1395">지원기관</th> <th data-bbox="542 1346 724 1395">지원 유형</th> <th data-bbox="727 1346 1401 1395">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5 1417 539 1912" rowspan="5">글로벌 기업</td> <td data-bbox="542 1417 724 1494">서비스 지원</td> <td data-bbox="727 1417 1401 1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개발tool, 크레딧 등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솔루션 무상/할인 제공</li> </ul> </td> </tr> <tr> <td data-bbox="542 1516 724 1592">교육 및 세미나</td> <td data-bbox="727 1516 1401 1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전문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 세미나 등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지원</li> </ul> </td> </tr> <tr> <td data-bbox="542 1615 724 1691">멘토링 및 컨설팅</td> <td data-bbox="727 1615 1401 16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기업의 기술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멘토링, 오피스 아워, 솔루션 기반 컨설팅 등 제공</li> </ul> </td> </tr> <tr> <td data-bbox="542 1713 724 1789">마케팅 및 판로개척</td> <td data-bbox="727 1713 1401 17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우수사례 홍보 지원, 글로벌 행사 참가 지원 등</li> </ul> </td> </tr> <tr> <td data-bbox="542 1812 724 1912">네트워킹</td> <td data-bbox="727 1812 1401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본사/파트너사/투자자 등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li> </ul> </td> </tr> </tbody> </table> <p>* 지원 유형 및 내용은 각 프로그램별 상이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참조</p> <p>** 지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지원기관	지원 유형	지원 내용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개발tool, 크레딧 등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솔루션 무상/할인 제공</li> </ul>	교육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전문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 세미나 등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지원</li> </ul>	멘토링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기업의 기술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멘토링, 오피스 아워, 솔루션 기반 컨설팅 등 제공</li> </ul>	마케팅 및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우수사례 홍보 지원, 글로벌 행사 참가 지원 등</li> </ul>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본사/파트너사/투자자 등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li> </ul>
지원기관	지원 유형	지원 내용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개발tool, 크레딧 등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솔루션 무상/할인 제공</li> </ul>													
	교육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전문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 세미나 등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지원</li> </ul>													
	멘토링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기업의 기술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멘토링, 오피스 아워, 솔루션 기반 컨설팅 등 제공</li> </ul>													
	마케팅 및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우수사례 홍보 지원, 글로벌 행사 참가 지원 등</li> </ul>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본사/파트너사/투자자 등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li> </ul>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또는 10년\*) 이내인 자

\* [붙임 3]의 신산업 또는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신청가능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 2019년 2월 27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 2016년 2월 27일 이후 창업한 기업 (붙임 4 분야 해당시)

####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신청분야

- 글로벌 기업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①AC트랙과, 협업을 추진하는 ②OI트랙으로 구분

① AC (Acceleration)	② OI (Open Innovation)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보유한 자원(솔루션, 멘토링)을 통해 기술 고도화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R&D 및 비즈니스 검증으로 창업아이템 현지화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년~'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
3. '25년 딥테크 벨류업 선정기업
4. 초격차 챌린지 선정기업
  - '22~'25년 팍리스 챌린지 -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 '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 '24~'26년 이노웨이브
  - '25년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 '25년 버티컬 AI 챌린지
  - '25년 LLM 챌린지
  - '25년 링크업
5.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연도별 사업명 상이)
  -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19~'20년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21~'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23~'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참고] 세부 프로그램명 : 창구, 엔업, 마중, 다운다, ASK, 지중해, 정글, 미라클, I-Start(IBM 협업), 인텔 협업, 오픈AI 협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⑫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 2. 27.(금) ~ 3. 16.(월)

###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마감시간(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신규 신청 불가)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마감된('26. 3. 16.(월) 16: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
  -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주관기관 별 운영 프로그램 >

- ③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자만 다르게하여 **복수의 프로그램에 신청이 불가**하며, **확인 시 전체 탈락** 처리

## □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양식)

– 각 프로그램 지원 시 다음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제출 (해당 시)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2단계) 제출서류 등은 서류평가(1단계) 통과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계획서 및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

프로그램명	평가 구분	추가 내용
창구	발표평가	발표평가 시, 앱 콘텐츠 시연을 위한 APK 파일 제출
미라클	발표평가	발표평가 시, 자사 솔루션과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연계 아키텍처 장표 제출
ASK	발표평가	발표평가 시, 자사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가상검증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결과 도출 방안 포함하여 제출
다운다	서류평가	공동연구 제안 시, '사업계획서'에 공동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
정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회사소개서(별도 양식없음) 포함하여 제출, 필요시 제안 서비스 관련 기사 또는 1분 지원 영상 링크 등 제출
로레알 빅뱅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회사소개서(별도 양식없음) 포함하여 제출

###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년 3월	'26.3월	'26.3월~4월	'26.4월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구분	대상기업	점수	비고 (제출서류 등)
서류평가 가점	• '26년 「CES K-Startup 통합관」 참가기업 중 '26년 혁신상(최고혁신상 포함) 수상 기업	1점	증빙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서류평가 면제	• '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전발굴 프로그램 최종 선정 기업	프로그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 본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온라인) 시 해당란 체크 필수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방법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대면평가 원칙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정) 규모만큼 선발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및 공고

\* 발표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으로 선정하지 않음

\*\* 프로그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 프로그램별 발표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자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한 경우, 잔여 T/O를 활용하여 타 프로그램 예비합격자 중 추가선정 가능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글로벌 기업 협업프로그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26년 초격차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펍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 민간 선별추천형, 상호자율탐색형, 방산·중견 스타트업 챌린지, AI 챌린지),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26년 초격차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펍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 민간 선별추천형, 상호자율탐색형, 방산·중견 스타트업 챌린지, AI 챌린지),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개발·개선, 사업화 전략과 자금 조달 방안, 보유 역량,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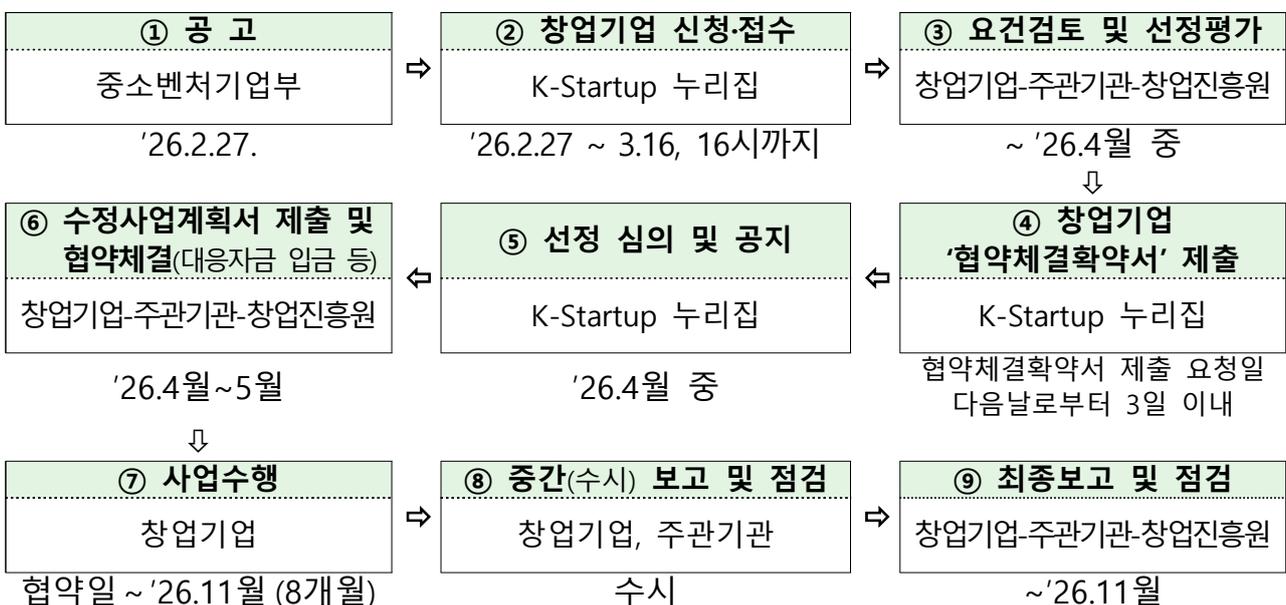
\* 프로그램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구성	• 기업 구성, 보유 역량 등
협업 시너지	• 글로벌 기업과 협업 가능성, 핵심전략, 협업 로드맵 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http://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26년 초격차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펍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 민간 선별추천형, 상호자율탐색형, 방산·중견 스타트업 챌린지, AI 챌린지),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26년 초격차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펍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 민간 선별추천형, 상호자율탐색형, 방산·중견 스타트업 챌린지, AI 챌린지),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사·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7

## 기타사항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주관기관명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1	넥스트챌린지	창구(구글플레이)	(T) 02-6352-6422 (E) ncf-ncglobal@ncf.or.kr
2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	엔업(엔비디아), 인지니어스(인텔), 열림(OpenAI), 빅뱅(로레알), HP Garege 2.0(HP)	(T) 070-4137-9022/9023 (E) global@nautilusinve.com
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다운다(다쏘시스템)	(T) 02-3017-7067 (E) lsy@kvca.or.kr
		지중해(지멘스)	(T) 02-3017-7065 (E) parksuhwa0321@kvca.or.kr
		N.E.O.(에어리퀴드)	(T) 02-3017-7068 (E) tami@kvca.or.kr
		아스텔라스(아스텔라스)	(T) 02-3017-7066 (E) kjh1005@kvca.or.kr
4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마중(MS), 정글(AWS), 미라클(오라클)	(T) 031-780-9094/9096 (E) globalhub@ccei.kr
5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ASK(앤시스) ASK SPACE(앤시스 스페이스)	(T) 044-860-3813 (E) youngjo802@korea.ac.kr
		Trust my Tech(탈레스)	(T) 044-860-3873 (E) jw_song@korea.ac.kr
		Konnectz(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IBM Quantum(IBM)	(T) 044-860-3817 (E) hj0918@korea.ac.kr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http://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신산업 창업 분야**

\*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신산업 27대 분야 >	⑩ 자율주행차	⑳ 신재생에너지
① 인공지능	⑪ 전기수소차	㉑ 이차전지
② 빅데이터	⑫ 바이오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③ 5G+	⑬ 의료기기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④ 블록체인	⑭ 기능성 식품	㉔ 우주
⑤ 서비스플랫폼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㉕ 차세대 원전
⑥ 실감형콘텐츠	⑯ 미래형 선박	㉖ 양자
⑦ 지능형 로봇	⑰ 재난/안전	㉗ 사이버 보안
⑧ 스마트 제조	⑱ 스마트시티	/
⑨ 시스템반도체	⑲ 스마트홈	

**초격차 분야**

\* 관련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책('22년 10월)

< 초격차 10대 분야 >	④ 친환경·에너지	⑧ 우주·항공·해양
① 시스템반도체	⑤ 로봇	⑨ 차세대 원전
② 바이오·헬스	⑥ 빅데이터·AI	⑩ 양자기술
③ 미래 모빌리티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붙임 4**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26년 초격차 챌린지 (도메인 AX)	중소벤처기업부
2	· '26년 초격차 챌린지 (버티컬 AI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3	· '26년 초격차 챌린지 (LLM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4	· '26년 초격차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5	· '26년 초격차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6	· '26년 초격차 챌린지 (이노웨이브)	중소벤처기업부
7	· '26년 초격차 챌린지 (팝리스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8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	중소벤처기업부
9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민간 선별추천형)	중소벤처기업부
10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상호자율탐색형)	중소벤처기업부
11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방산·중견 스타트업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12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AI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13	·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4	·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16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8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0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1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4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5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6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28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29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0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1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2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3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